

법학전문대학원 장학위원회 지침

시행일 : 2019. 03. 01.

제1조 (목적) 장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본 대학원이라 한다) 재학생에 대한 장학관련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의 구성)

- ① 장학위원회는 본 대학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본 대학원 전임교원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장학위원회의 간사는 본 대학원 행정실장으로 한다.
- ③ 장학위원회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3조 (위원회의 기능) 장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장학정책의 수립
- 2. 장학추천자의 선발
- 3. 본 대학원 장학위원회 지침 개정에 관한 사항
- 4. 기타 장학에 관한 주요 사항

제4조 (위원회의 의결)

위원회의 의결은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으로 의결한다.

제5조 (소집)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6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은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본 규칙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지침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